
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」 -

검 토 의 견 서

1. 발의연월일: 2023. 9. .

2. 발 의 자: 박정환 의원

3. 제안이유

- 「병역법」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중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정의, 구청장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지원대상, 지원내용(안 제4조)
 -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현역병, 상근예비역,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대원(제1항~제3항)
- 지원내용 및 홍보(안 제5조~제6조)
 - 매년 지원대상, 보험기간, 보장범위 등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계약을 지원할 수 있고, 이에 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함
- 평가(안 제7조)
 - 구청장은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
- 준용(안 제8조)
 -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에 따름

5. 참고사항(관계법령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 및 제28조
- 「병역법」 제16조, 제20조, 제22조, 제25조

6. 검토의견

- 해당 의원발의 조례안은 청년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달서구에 주소를 둔 군복무 청년의 상해보험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,
- 지원대상(안 제4조) 관련하여 유사 지원사업(국방부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, 나라사랑카드 발급에 따른 병상해보험)이 있으며, 본 조례안에 따른 상해보험가입 시 중복지원이 될 수 있음
- 해당 조례안 제5조(지원내용)의 규정의 시행을 위해서는 보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게 되고, 보험업체에 지급하는 보험료에 비하여 군복무 청년의 수혜율이 낮은 등으로 재정운영 효율성이 낮고, 매년 보험계약에 따른 재정의 부담이 예상됨
- 제정의 필요성, 타 지원사업, 재정 부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조례 제정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